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審 査 報 告 書

2006. 11. 1.
제254회 임시회

1. 심사 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6년 10월 11일
- 회부일자 : 2006년 10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2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6. 10. 25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곽 연 창)

가. 제안 이유

- 오송국제하이테크 박람회 개최 및 오송단지 입주기업의 제품전시와 홍보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5년 제245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얻은 오송전시컨벤션센터신축사업의 시설확충과 건축비의 증액사유 발생
- 미동산수목원 부지 및 주차장으로 무상사용하는 청원군 소유의 임야와 청원군이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하려는 우리 도 소유의

잡종재산으로 교환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재산의 취득

《 오송전시컨벤션센터 신축 변경 》

- 위 치 :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과학단지내
- 사업규모
 - 토지매입 : 1필지 33,000m²
 - 건물신축 : 지하1층/지상2층 4,533m²(철근콘크리트 스투브)
- 사업기간 : 2005. 11 ~ 2008. 5
- 사 업 비 : 13,400백만원(도비)

※ 주요변경내역

- 건물신축 : 지상 1층 3,300m² → 지하1층/지상2층 4,533m²
- 사 업 비 : 9,500백만원 → 13,400백만원

《 미동산수목원 주차장 부지등 교환 》

- 교환대상
 - 도유재산 : 청원 낭성 이목 263-14외 12필지 7,294m²
 - 공유재산 : 청원 미원 미원 산 17외 1필지 15,683m²
- 재산가액
 - 도유재산 : 655,158천원
 - 공유재산 : 655,076천원
- ※ 재산가액은 예비감정 평가액으로 교환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 사업기간 : 2006. 10 ~ 12

○ 사업비 : 비예산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전문위원 연기봉)

○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은

- 오송전시컨벤션센터 시설확충과 건축비의 증액에 따른 2005년 제245회 정례회에서 의결을 받은 오송전시컨벤션센터의 재산취득 확대를 위한 사항이며
- 미동산수목원 부지 및 주차장으로 무상사용하는 청원군의 소유 입야와 청원군이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하려는 우리 도 소유의 잡종 재산으로 교환하기 위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오송전시컨벤션 시설확충에 따른 공유재산의 변경취득에 관한 사항임

- 본 사업은 우리도 차세대 핵심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세계적인 융합기술(BINT)클러스트의 중심지로 발돋움 하고 있는 오송생명과학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 2005년도 제245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얻은 사업으로
- 당초 지원시설용지 부지매입 33,000㎡, 건축면적 3,300㎡, 사업비 95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 1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최신식 컨벤션전시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 건축면적 4,533㎡, 사업비 134억원으로 확충, 투자하여 20

05년 1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변경추진 하려는 것으로

- 오송국제바이오테크 박람회 및 오송단지 입주기업의 제품 확대 등 홍보관, 전시시설의 기능 변화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계획변경으로 이해됨.
- 그러나, 건축비 증액 요인이 되는 오송국제하이테크 박람회 연기한 사유 및 건축규모를 확장하는 사유, 그리고 134억원에 대한 재원 조달계획, 컨벤션시설 유지 방안과 예상관리 비용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음, 재산의 교환 취득에 관한 것으로 미동산수목원 주차장 부지 등 교환취득 계획임.

- 미동산수목원 부지 및 주차장이 소재한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산17의 1필지 15,683㎡(재산가액655,076천원) 청원군 소유의 것과 청원군 낭성면 이목리 263-14의 12필지 7,294㎡(재산가액655,158천원) 우리 도 소유의 잡종재산을 교환하는 것으로써
- 재산권과 사용권을 일원화를 통한 공공용 시설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환 취득을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교환취득 대상인 청원군 소유의 재산중에 현재 주택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상 건축물을 처리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수정가결

가. 세부 계획별로 질의·답변을 한 후 심사의결

나. 심사결과

- 재산의 취득중 컨벤션 규모의 적정성, 박람회 개최 계획 등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된 『오송전시컨벤션센터신축 변경』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36

제출연월일 : 2006년 10월 1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오송국제하이테크 박람회 개최 및 오송단지 입주기업의 제품전시와 홍보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5년 제245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얻은 오송전시컨벤션센터 신축사업의 시설확충과 건축비의 증액사유 발생
- 미동산수목원 부지 및 주차장으로 무상사용하는 청원군 소유의 임야와 청원군이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하려는 우리 도 소유의 잡종재산으로 교환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 미동산수목원 주차장 부지등 교환 》

○ 교환대상

- 도유재산 : 청원 낭성 이목 263-14외 12필지 7,294㎡
- 군유재산 : 청원 미원 미원 산 17외 1필지 15,683㎡

○ 재산가액

- 도유재산 : 655,158천원
- 군유재산 : 655,076천원

※ 재산가액은 예비감정 평가액으로 교환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 사업기간 : 2006. 10 ~ 12

○ 사업비 : 비예산

3. 예산상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재산취득	재산처분	교환취득	교환처분
계	-	-	비예산	비예산
○ 미동산수목원 주치장 부지 교환	-	-	비예산	비예산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서 : 별첨

- 교환 취득·처분재산 목록 : 따로 붙임

5. 관계법령 : 별 첨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8조

200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 《 집행부 제출안 》

(단위 : m²)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1 건	33,000.0	5,000,000				
	건물	1 건	4,533.0	8,400,000				
	기타							
1	토지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 과학단지내	33,000.0	5,000,000	2005 ~ 2008	오송국제하이 테크박람회 개최 및 제품전시관 등 활용	매 입 (한국토지 공사)	
	건물	"	4,533.0	8,400,000	"	"	신 축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200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

《 위원회 수정안 》

(단위 : m²)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건물							
	기타							
1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2006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7-5)

《 집행부 제출안 》

(단위 : m²)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교 환 시 기	교 환 사 유	교 환 대 상 자	비고
	구분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취득		1 건	15,683.0	655,076			
		처분		1 건	7,294.0	655,158			
	건물	취득							
		처분							
	기타	취득							
		처분							
1	토지	취득	임야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산 17외 1필지	15,683.0	655,076	2006	미동산수목원 부지 및 주차장	청원군수
		처분	잡종지	청원군 낭성면 이목리 263-14외 12필지	7,294.0	655,158	"	낭성면 복지회관 등 신축	"
	건물	취득							
		처분							
	기타	취득							
		처분							
2	토지	취득							
		처분							
	건물	취득							
		처분							
	기타	취득							
		처분							

2006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7-5)

《 위원회 수정안 》

“집행부 제출안과 같음”

교환 취득·처분재산 목록

《 집행부 제출안 》

(단위 : m²)

구 분	재 산 소 재 지	지 목	지 적	재산가액	교 환 사 유
취 득 (균유립)	소 계		15,683	655,076,000	
	청원 미원 미원 산 17	임 야	10,913	240,086,000	미동산주차장 활용
	청원 미원 미원 32-4	임 야	4,770	414,990,000	집단화 추진
처 분 (도유지)	소 계		7,294	655,158,000	
	청원 오창 모정 322-21	잡종지	1,283	135,998,000	오창면 게이트볼장
	청원 오창 모정 322-22	잡종지	1,442	152,640,000	일단의 토지
	청원 오창 모정 322-12	하 천	646	64,600,000	"
	청원 낭성 이목 263-15	잡종지	251	18,825,000	낭성면 복지회관
	청원 낭성 이목 263-14	전	1,347	101,025,000	낭성면 복지회관
	청원 낭성 이목 263-21	전	331	24,825,000	낭성면 복지회관
	청원 낭성 이목 263-22	제 방	385	30,800,000	일단의 토지
	청원 낭성 이목 263-3	전	490	39,200,000	"
	청원 낭성 이목 263-23	전	384	30,720,000	"
	청원 낭성 이목 263-18	전	324	24,300,000	"
	청원 낭성 이목 263-19	답	245	19,600,000	"
	청원 낭성 이목 263-16	전	131	9,825,000	"
	청원 낭성 이목 263-20	답	35	2,800,000	"

교환 취득·처분재산 목록

《 위원회 수정안 》

“집행부 제출안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취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 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 10 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 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p> <p>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p>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